

[117] 정신신경용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<p>Duloxetine 경구제 (품명 : 심발타캡슐 등)</p>	<p>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</p> <p>나.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(경고, 이상반응, 일반적주의 항목 등)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.</p> <p>다.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</p> <p>1)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이내에서 인정함</p> <p>2)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</p> <p>3)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.</p> <p>4) 신경계 질환(뇌전증, 뇌졸중, 치매, 파킨슨병)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.</p> <p>※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○ 3가지 전형적 증상 (우울한 기분, 흥미나 관심 소실, 피곤감/활동저하)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(집중력/주의력 저하, 자신감저하, 죄책감, 비관/염세적 사고, 자살사고, 수면장애, 식욕감퇴)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</p> <p>2.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>가. Thioctic acid(또는 α-lipoic acid)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>나.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(예: Gabapentin, Pregabalin 등) 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.</p> <p>3. 섬유근육통(Fibromyalgia)의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, 삼환계 항우울제(TCA; Amitriptyline,</p>

	<p>Nortriptyline 등)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(Cyclobenzaprine 등)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</p> <p>나. Pregabalin(품명: 리리카캡슐)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.</p> <p>※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진단설문지(FIQ;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) 점수가 40점 이상이며,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(pain VAS; pain Visual Analog Scale)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, 투여개시 13주 후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.</p> <p>4.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시에는 「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‘Ⅲ.암성통증치료제’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함.</p>
--	---